

##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

소관부서 : 의회사무과

제정 2011 · 1 · 5 조례 제 876호  
일부개정 2014 · 10 · 15 조례 제1061호  
일부개정 2018 · 12 · 31 조례 제1458호  
일부개정 2023 · 4 · 6 조례 제1926호  
일부개정 2025 · 8 · 8 조례 제2278호  
일부개정 2025 · 11 · 7 조례 제2312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포상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(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)과 기관·단체에 행한다. <개정 2025 · 11 · 7>

**제3조(포상권자)** 포상은 이천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행한다. <개정 2025 · 8 · 8>

**제4조(포상의 종류)**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(패), 상장, 감사장(패)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. <후단신설 2025 · 8 · 8>

**제5조(포상에 따른 부상)** 제4조에 따른 포상은 「공직선거법」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, 상패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5 · 8 · 8]

**제6조(표창장·패)** 표창장(패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 <개정 2018 · 12 · 31, 2023 · 4 · 6>

1.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
2.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
3.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
4.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
5. 제도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이나 의회 방청 또는 견학에 솔선 참여하여 의회

발전에 기여하는 학생

6. 이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

**제7조(상장)**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
1. 예술·학술·체육 등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진대회, 전시회,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
2.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

**제8조(감사장·패)** 감사장(패)은 의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의회를 발전시켰거나, 의회의 명예를 높인 시민이나 기관·단체에 수여한다.

**제9조(포상대상자 추천)** ① 포상대상자 추천자는 이천시의회 의원, 이천시의회 사무과장, 대상자의 각 기관·사회단체장으로 한다. 다만, 제6조의 상장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으로 한다. <개정 2023·4·6, 2025·11·7>  
② 제6조에 의한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표창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공적심사)**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모범졸업생에 대한 포상과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, 상장 및 감사장(패)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. <개정 2023·4·6>

**제11조(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의장은 포상 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「이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」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, 의회사무과장, 전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·4·6>
-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의정팀장으로 한다.
-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.
- ⑤ 위원회는 포상이 요구되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-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가 심사·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.

**제12조(포상 시기)** ①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·8·8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6호에 따른 포상은 매년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. <신설 2025·8·8>

**제13조(포상 통제 등)** ①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·단체 별로 연간 3회 이내로 한정한다. 다만, 제7조의 상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3·4·6>

②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

2.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3.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

**제14조(포상대장의 등재)**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상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이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천시의회 포상 조례

부칙 <2014 · 10 · 15 조례 제106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 · 12 · 31 조례 제145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 · 4 · 6 조례 제192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5 · 8 · 8 조례 제227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5 · 11 · 7 조례 제231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제 호

## 표 창 장

주소 또는 소속

직 성명

(표 창 문)

년 월 일

이 천 시 의 회 의 장

○ ○

직 ○ 인

[별지 제2호서식]

제 호

상 장

주소 또는 소속

직 성명

(상 문)

년 월 일

이 천 시 의 회 의 장

○ ○

직 ○ 인

[별지 제3호서식]

제 호

## 감 사 장

주소 또는 소속

직 성명

(감사문)

년 월 일

이천시의회의장

○ ○

직○인

[별지 제4호서식] &lt;개정 2025·11·7&gt;

## 공 적 조 서

(1) 성 명		( 漢 子 )												
(2) 생년월일 (성별)									(3) 군번 (군인의 경우)					
		(성별: )												
(4) 본 적						기 재 생 략								
(5) 주 소														
(6) 직 업						(7) 소 속								
(8) 직 위						(9) 등 급 (직급, 계급)						(10) 근무 기간		
(11) 공적요지 (50자 내외)						(12) 공적 분야코드								
(13) 추천훈격						(14) 추천순위								
조 사 자														
(15) 소 속						(16) 직 위								
(17) 직 급						(18) 성 명			(인)					
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				
추천자 직위						성명			(직인 또는 인)					

## 주 요 학 력 및 경 력

(19)년월일	(20) 학 력	(21)년월일	(22) 경 력

과거 포상기록 (훈장, 포상, 표창별로 기록)

(23)년월일	(24) 내 용	(25)년월일	(26) 내 용

(27) 공 적 사 항

공 적 조 서 (을)

공	적	사	항

[별지 제5호서식]

## 확인서

성명	
생년월일	
주소	
포상구분	

상기 인은 「이천시의회 포상 조례」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
## ※ 동 조례 제13조 제3항
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
2.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3.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6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

년 월 일

확인자

(직인)

[별지 제6호서식]

### 공 적 심 사 의 결 서

심사개요

1. 일 시 :
2. 장 소 :
3. 안 건 :
4. 심사대상 인원 :
5. 공적심사 조서 : 별첨

주문사항 :

심사결과 :

위와 같이 심사 의결함.

년 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 일

구 분	직 위	성 명	서명	비 고
위 원 장	부 의 장			
부 위 원 장	의 원			
위 원	의 원			
위 원	사 무 과 장			
위 원	선 임 전 문 위 원			

붙임 : 공적조서

이 천 시 의 회 공 적 심 사 위 원 회

[별지 제7호서식]

# 포상수여대장

※ 참고 : 발급번호는 포상 종류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.